

## 예 산 총 칙

2007년도 [2회추경]

제 1 조 :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회 계 별	세입 · 세출 예산 총액	일 시 차 입 한 도 액
총 계	334,947,380	10,048,421
일반회계	298,011,777	8,940,353
기타특별회계	36,935,603	1,108,068
상수도사업	32,610,011	978,300
의료보호비	895,274	26,858
영세민생활안정자금	41,700	1,251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463,129	13,894
주택자금융자	449,050	13,472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2,133,747	64,012
간척지구농지기금	242,692	7,281
완도군기반시설부담금	100,000	3,000

제 2 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 2007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 4 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12,614,369,000원으로 한다.

제 5 조 :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인건비(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2. 복리후생비
3.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